



김해시복지재단

## [착한 김해시 만들기] 협약서

(재)김해시복지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(이하 “모금회”라 한다)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[착한 김해시 만들기]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 본 협약을 이행한다.

#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[착한 김해시 만들기] 사업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“재단”과 “모금회”의 모금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역할 및 책임)

“재단”과 “모금회”는 [착한 김해시 만들기]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.

1. “재단”은 기부자 발굴 등 모금에 관련된 업무 협조를 담당한다.
2. “모금회”는 기부금 접수 및 관리, 영수증 발급, 현판 제작 등 기부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3. “재단”과 “모금회”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사업의 기부자 개인정보를 상호간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다.

### 제3조(기부금 모금 및 관리)

1. “모금회”는 모집한 후원자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된 일자에 금융결제원을 통한 일괄 출금과 계좌를 통해 모금한다.
2. 본 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[김해누리!행복누리!] 사업 모금재원으로 관리하고 조성된 재원의 사업비 비율은 [김해누리!행복누리!] 사업 협약서에 따른다.



## 김해시복지재단

### 제4조(협약기간)

본 협약은 협약의 각 당사자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2023년 12월 15일로 하며, 협약 종료일 2주 전까지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단위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.

### 제5조(협약의 변경)

“재단”과 “모금회”는 본 협약의 내용과 세부계획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문서로 상호 통보하되 협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.

### 제6조(관계법령 준수)

“재단”과 “모금회”는 본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모금된 재원의 배분과 관련된 사항 등 세부사항은 [김해누리!행복누리!] 사업 협약에 따른다.

### 제7조(기타)

1. 본 사업은 협약일로부터 적용하며 기존 기부자에게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는다.
2. 본 협약은 협약사항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경우 필요시 서면통지에 의해 해지할 수 있다.
3. 본 업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2월 22일

(재)김해시복지재단  
대표이사 최정규

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 
회장 강기철

대)이성룡